

의안번호	제 90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907
----------	-----

제출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음성군에서는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우천 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농로의 포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16번지 일원은 도유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 상 : 토지(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16번지 일원)
- 7필지, 5,124㎡ 중 980㎡편입
- 사용기관(다른 자치단체) : 음성군
- 동의내역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금왕읍 금석1리 농로포장공사)
- 적용시기 : 2025. 5. 1. 부터

3.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사업기간 : 2025. 5월 ~ 6월
- 위 치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16번지 일원
- 사 업 비 : 48,110천원(군비 100%)
- 사업내용 : 농로포장공사 1식
- 사업규모 : L = 250m, B = 3.0~3.5m
- 세부내역

연번	구 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비고
1	토공	터파기	272	m ²	
		층따기	20	m ³	
		되메우기	86	m ³	
		운반(잔토)	197	m ³	
2	배수공	배수관	5	m	
3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721	m ²	
4	부대공	운반비	1	식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